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(등록말소)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대상업체

| 업체명 (대표자) | 등록업종 (등록번호) | 영업소 소재지 | 처분근거 | 처분내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국제설비 고** | 가스·난방공사업 인천서구2008-27-07 |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77번길 19 (신현동) |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| 등록말소 |

2. 공고장소 :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3. 공고기간 : 2026. 5. 21. ~ 2026. 6. 5.

4. 기타사항

-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에 공고하였습니다.
-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 의 : 서구청 도로과(032-560-4484)